

의안 번호	538
----------	-----

제목 :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안

제 출 일 : 1995년 2월 일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

I.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148조 및 동법시행령 48조~54조에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의거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를 구성, 대전·충청권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하고 권역안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

II. 주요골자

- 가. 협의회 조직의 위원은 대전광역시장,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이며, 회장은 윤번제로 임기는 1년임 (안 제4조)
- 나. 주요기능은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 공동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택단지및 공업단지등 조성,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및 감시, 시·도간 연결노선버스조정 등 광역적 행정사항임. (안 제5조)
- 다. 회의참석범위는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관련실·국장 시장, 군수, 구청장등임. (안 제8조)
- 라. 협의방식은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기회는 년2회,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개최함. (안 제6조, 제7조)
- 마.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안 제12조)

III. 참고사항(관련법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142조~148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54조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규약(안)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제 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충청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권역안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 2조(사무소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내에 둔다.

제 3조(구성) 협의회는 대전·충청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충청남도(이하 “구성단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 4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대전광역시장,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로 하고, 회장은 시·도 직제순에 의한 지방자체단체의장 순으로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부지사가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 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2.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등의 조성
4.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및 감시에 관한 사항
5. 시·도간 연결버스 노선의 신설·변경·폐지등 교통망에 관한 사항
6. 도로의 신설 및 개수·보수등에 관한 사항
7. 상·하수도의 설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9. 농림수산물의 유통·판매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 10. 금강유역개발 및 이용,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11. 기타 광역행정 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제 6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안건의 합의는 위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8조(회의참석) ①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참석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협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구성단체의 실·국장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참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9조(사무처리)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 기획관이 되고, 서기는 광역행정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협의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요구등)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구성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미합의 사항 조정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정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 ② 실무협의회는 구성단체 기획관리실장과 협의안건 관련 실·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안건에 따라 관계 실·과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간사와 서기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 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되,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16조(규약개정등) 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전원의 참석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보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5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관련법규 발취》

지 방 자 치 법

제142조(행정협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모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4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회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6. 기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등)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공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6조(협회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정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도간의 협회사항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간의 협회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시·군 및 자치구가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47조(협의회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4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40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48조 (협의회회의 규약변경 및 금지) 협의회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제48조(행정협회의의 구성기준) ①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등의 필요를 참작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중 수도권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49조(협회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50조(협의회 구성보고) 중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사본

제51조(회장) 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회장은 1인으로하되, 회장이 사 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의회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는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상황을 보고하여 한다.

제53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54조(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